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¹⁾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교육팀장, 변호사

I. 들어가며

1. 관점에 대한 해명

본 발제문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걸치레를 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언론보도가 갖는 여러 순기능과 공익에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언론보도는 순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그 문제점만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은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밀턴의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가치다.²⁾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실의 언론보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보인다. 언론보도라는 것이 헌법 교과서 속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신성하거나, 고결하거나, 완벽하지만은 않다. 언론보

도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언론보도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의도치 않은 오보도 있고, 간혹 오보를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닐까 의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언론보도의 속성상 개인의 명예나 초상,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상쇄시킬만한 어떤 공익적 이유나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갖는 긍정적 요소에만 집중한 나머지 언론보도에 현존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가 부정되거나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처지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론보도가 제 아무리 신성하고, 필요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미시적 관점에서 개개의 언론보도가 공익적 이유나 사정도 없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정보도 등 법적 책임을 지

1) 본 원고는 지난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언론전담재판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

2) 허영(2005). 「한국헌법론」(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p. 540.

는 것이 불가피하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하나가 겪는 괴로움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 “언론보도는 신속성이 생명이라구. 좀 급히 쓰다보면 오보가 생길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주장이 언론보도는 완벽해야 한다거나 무흠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의 공적 기능도 십분 살리면서 그로 인한 피해 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익숙하고 편리했던 기존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타파하며 새로운 취재 및 보도 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사례들의 출처

본 발제문에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 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사례들의 출처는 대 법원 판결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결과 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 센터(이하 ‘상담센터’라고만 하겠다)에 접수된 상담 사건이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 센터는 지난 2004년 4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일환으로 설치된 언론보도 관련 전문상담기 구다.³⁾ 필자는 상담센터 설치와 더불어 위 센터 상 담교육팀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만 3년 7개

월 동안 언론보도 관련 피해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센터 출범 후 200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접수, 처리된 상담건수는 대략 8,658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필자가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상담을 했거나 다른 상담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본 것들 중에서 특히 살펴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들을 뽑아보았다. 따라서 약간의 변형이나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거의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는 어떤 보도들이 문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I.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들⁵⁾

1. 불완전한 익명처리의 문제

* (1-1) 서울시 중로문구 소재 언론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양모 교사가 있다. 그런데 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중앙일간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이다.

“양모 교사가 서울시 중로문구 소재 언론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중, 과도한 체벌이 문제되어 타 학교로 전출되었다”.

과연 이 기사에서의 익명처리는 해당 교사의 신원을 보호하기에 충분했나?

* (1-2) 서울대학병원에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한

3) 사무처직제규칙 제2조 제2항

4) 2007. 6. 20. 사무처직제규칙 개정으로 종전의 ‘법무상담팀’에서 현재의 ‘상담교육팀’으로 부서 명칭과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현재 공식 명칭은 상담교육팀이고 주로 언론보도 관련 피해에 관한 상담, 언론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언론분쟁 관련 대내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사무처직제규칙 제7조 제3항).

5) 이 장의 내용 상당 부분은 필자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월간지 ‘신문과 방송’에 기고한 내용과 유사함을 미리 밝힌다.

사람이 있다.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고 이를 존중하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서울대병원은 17일 서울에 사는 70대 부부가 각각 삼성전자 주식 1만 주씩 2만 주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의 익명처리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가. 문제의 제기

일간지 사회면을 펼치면 군데군데 익명 처리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기법을 가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모두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의 조처들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나 방송을 바라보는 심경은 호뭇하기보다 다소 불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안한 말이지만, 언론이 익명보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익명처리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의 익명보도가 진정으로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욱더 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1-1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교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성(姓)과 재직 중이던 학교의 이름 그리고

3학년 담임이라는 사실 정도가 공개되었다. 문제는 이 보도에서 학교 이름이라든가 해당 교사가 3학년 담임이었다는 사실까지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보도의 목적이 교사의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사건 자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적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양모 교사의 자녀와 부모형제, 이웃주민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까지 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그의 신변에 일어난 일들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보도록 한 기사를 두고 단지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익명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⁶⁾

익명보도인지, 아닌지를 단지 보도에 실명이 언급되었는지 여부에 비추어 기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즉,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의 익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보도의 나머지 내용과 심지어 '주위 사정'까지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문자나 이니셜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도 판례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⁷⁾이라고 하니 두문자나 이니셜 표시만 했다고 해서 익명성을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사례 1-2

6)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7)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 사례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익명처리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 살펴본다.

해당 보도에는 기부자의 성명이나 주소, 가족관계는 물론 정확한 나이조차 감추어져 있다. 물론, 표시된 약간의 인적사항도 없지는 않다. 기부자들이 삼성 전자 주주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70대의 노부부라는 사실도 적시되어 있다. 보도 중간에는 기부자 부부의 과거 병력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기부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내용 전개상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인적사항 표시라면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나 당사자 모두에게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 중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내린 것이 있다.

“기사 작성 상 신원을 밝히지 않고는 사실특정이 곤란한 경우에까지 익명보도를 요구하면 언론매체로 하여금 사실상 범죄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여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공적 과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작성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원을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인 원고의 성 또는 가명, 연령, 학력, 직업과 작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기사 작성 상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즉, 소설가인 원고가 컴퓨터 통신에서 글을 발표하고 있던 여성에게 문학에 대해 대화하자며 접근하여 스토킹이 시작되었다는

점, 원고와 같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로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스토커로서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위 각 요소들은 위와 같은 기사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⁸⁾

이 판례에 등장한 문제된 사건 기사의 익명처리 역시 불완전했다. 당사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성씨, 가명, 연령, 학력, 직업, 작품명 등이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로 인정한 것은 범행수법 및 스토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범죄라 할 수 있었던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익적 의미가 해당 보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는 해당 사건 보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에서 그쳐야 한다.

다. 정리

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인이건 사인이건 사회면 기사에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실명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나 성씨나 나이, 주소, 직업, 직장명 등 당사자를 추지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관행은 여전히 여전하다. 하지만 그러한 인적사항 기재 역시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나이의 표시, 상세한 주소의 기재도 많은 경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해당 인물의 직장명과 직위까지도 최대한 감춰야 한다. 방

8) 서울지방법원 2001.12.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

송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를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에서의 익명처리가 보다 더 과감하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 보론

이 익명성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보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보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불특정 되어있다면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보도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하면서 정작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최모 교사’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⁹⁾

“이 사건 각 기사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K아파트’ 또는 ‘서울 독립문 K아파트’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과 그 주변사람들로서는 K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인 ‘독립

문 극동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¹⁰⁾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 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¹¹⁾

누구를 기준으로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특정 여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피해자를 잘 모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씨나 나이, 주소, 직업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표시한 언론보도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 인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해자 특정은 다소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특정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건으로는, 이 피해자 특정이 결국 명예훼손의 문제인 만큼 피해자 자신이라든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고 직장 동료, 친구, 동창, 이웃 주민들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판례에서 ‘주변 사람’이라고 한 것이 정확히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주변 사람’으로 보는 것도 무난할 것이다.

2. 작위적 익명보도의 문제

* (2-1) 웰빙 붐을 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의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와 사실

9)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10)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기관에서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송이 되었으나 해당 회사의 이름은 익명처리되었다.

* (2-2)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비리의 진상이 밝혀지려 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기무부대 소속 현역 장성 3명 정도가 비리에 가담했다고 한다. 이에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3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었다', '기무사 A장군은 보좌관을 시켜 군 병원 진료부장에게 압력을 넣어 친척을 의병 전역시켰다', '모 기무부대장 B장군과 C장군도 입영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자 한다.

가. 문제의 제기

앞에서 익명보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익명보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실명보도를 해야 하고, 실명보도를 하지 않고 익명보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모든 익명보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익명보도는 취재가 불완전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보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보도의 기본인 진실성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기보다 모호한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익명보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보도를 두고 '작위적(作爲的) 익명보도'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¹²⁾ 연예인 관련 보도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때의 익명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긴다. 본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제안되었던 익명보도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변질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보도는 양날의 검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쪽은 당사자를 지키는 선한 칼날이지만, 다른 한쪽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엔 당사자를 더욱더 해치고야 마는 무서운 칼날과도 같다. 그러므로 익명보도는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2-1

특정 회사의 돌침대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안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우 공공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사라 할 만하다. 즉, 사안의 성격상 일단 보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보된 내용의 신빙성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아야 하고, 만일 그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면 검증된 연구소라든가 국가 공인 실험실에 제품 실험을 맡겨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서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이때는 해당 회사의 이름을 '밝혀'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제보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 없이 일단 보도하고 보는 것이다. 단, 해당 회사의 제품명이나 회사 이름은 철저히 익명으로 한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돌침대 제품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는 피해상황이 벌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방사능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이름이 익명처리되는 바람에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

12) 차용범(2002, 겨울).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언론중재』, 통권 85호, p. 21.

까지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아 판매실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다. 또, 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완전한 익명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사건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기자나 언론사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보고 만일 해당 제보 내용(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해당 회사의 이름을 밝혀 실명보도하는 것이다.

(2) 사례 2-2

잘 알다시피 지난 99년도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한 방송사에서 특종을 한 것인데 익명처리에 문제가 있어 그만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송에서 방송사 측은 “보도에서 원고들을 특정한 바 없고 단지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하여 A, B, C 장군으로 표시하면서 장성 3 ~ 4명이라고 그 수까지 밝혀 보도한 이상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투었다. 이 소송은 방송사의 패소로 끝났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항변이었음에도 방송사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안에서 익명처리 자체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장군들의 성(姓)이라든가 이니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기무부대 소속의 A, B, C 장군이라고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병역비리에 연루된 기무부대 장군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이 사건 보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병역비리에 연루된 장군들이 아닌 나머지 비리와 무관했던 기무부대 장군들이 방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도에서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3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막연하게 표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방송사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보도로 인해 결백한 기무부대 장군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 기무부대 장군은 불과 8명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무부대 장군 8명 중 병역비리에 연루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직업, 학력, 지연, 출신 등에서 유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수(집단의 크기), 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하게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 요소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³⁾

개인적으로 이 같은 사안에서도 관련자들의 이름을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기무사 장성 정도면 공인이거나 공적 인물에 해당될 것인데 굳이 신원을 숨겨줄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혐의 사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지인데 신빙성만 충분하다면 당당하게 실명보도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다. 정리

익명보도를 할 것이냐, 실명보도를 할 것이냐의

13) 서울지방법원 2000.10.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문제를 놓고 기자들 역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¹⁴⁾ 그러나 그 고민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당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가 불확실할 때 기자들은 실명으로 보도할 것인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고민의 방향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취재가 미진하다면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도 자체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실명으로 할 것인지, 익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당 내용이 사실임이 확실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public interest)의 범위 문제

* (3-1) 모 대학병원에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이 있다.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담의 주인공을 알고 싶어 한다. 기자인 당신은 기부자의 신원을 공표할 것인가?

* (3-2)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스타였지만 지금은 연예계를 은퇴하여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화제의 드라마가 최근 리메이크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이 사람에게로 쏠리고 있다. 여러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는데 기자인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3-3) 가수 A씨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가요계에 입문한 후 여러 차례 10대 가수, 올해의 가수 등에 선정된 바 있는 연예인이다. 이런 그가 최근 한 케이블 TV와의 인터뷰에서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며칠 후 한 신문에서 「A '신부' 공개」라는 제목으로 A씨 및 그의 애인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들이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와 B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 있을까?

가. 문제의 제기

언론의 사명 내지는 역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관심은 언론보도를 존재케 하고 나아가 정당화해줄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보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¹⁵⁾ 다시 말해, 모든 대중의 관심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공중의 관심사 중에서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curiosity)이라고 부르고 싶다. 만일 이러한 호기심만으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때의 언론보도는 공공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단순한 호기심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나. 사례 검토

14) 최영훈(1999, 가을).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언론중재』, 통권 72호, pp. 13 ~ 15.

15) 판결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믿는다.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판결)

(1) 사례 3-1

이 사안은 지난 2005년 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노부부가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기금으로 써달라며 88억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익명으로 기부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공명심조차 품지 않고 거액을 내놓다니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는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기부 사실만을 보도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중앙일간지는 기부자의 신원을 사진 및 이름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기부자의 신원을 공표한 것이 보도윤리 위반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단지 보도윤리 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사실 자체를 넘어 기부자가 누구였는지까지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수 있는 가라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부자의 신원에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기사를 정당하다고 볼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이 사안은 특종을 노린 기자의 과도한 취재욕이 가져온 인격권 침해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사례 3-2

공인이라든가 공적 인물의 사생활 일부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공인인 사람은 사생활마저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결혼 예정 사실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공인과 사인(私人)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공인의 신분에는 있는 자가 자신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개를 거부하며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처럼 과거 공적 인물이었던 사람은 좀 다르다. 오래 전에 전 국민적 관심을 끌던 드라마가 다시 리메이크 되면서 덩달아 종전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여성이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여성은 연예계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과거 연예인이던 시절처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곰곰이 음미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¹⁶⁾

(3) 사례 3-3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언론사는 A씨의 결혼 예정 사실을 보도했다. 인기 스타의 결혼 예정 사실 정도라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기에 설령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한 언론사를 비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그러면 인기 스타가 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닌 B씨의 경우는 어떨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B의 경우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사귀고 있는 A가 인기 스타라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어느 정도 대중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B가 1996. 미스코리아 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원고 B를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 A와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로서는 원고 A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실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달리 원고 A가 결혼할 상대가 바로 원고 B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¹⁷⁾

다. 정리

언론이 보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국민의 알권리’다.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는 ‘신정아 누드 사진 보도’ 이후에도 해당 신문사는 “선정성 부분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공익 또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¹⁸⁾ 그러나 언론이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혹시 대중의 호기심을 알권리로 혹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public interest)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단순한 호기심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보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특종을 해야 하고, 특종을 요구하는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단지 그것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자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계 전반적인 관행과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종을 노리거나 낙종을 피하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여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편집권의 한계와 진실보도

* (4-1)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던 A를 경찰관이 B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의 진단 결과, A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의존증도 있었다. 그런데 A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하나뿐인 친척집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 측은 A를 4년간 입원치료 해주었다.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측은 A의 진짜 이름 대신 경찰서로부터 최초 인계받을 때의 서류에 기재된 C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기사는 정신보건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되었고, 영터리 이름으로 관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17) 서울지방법원 2001.12.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8) 2007.9.13.자 기자회견보

를 진실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 (4-2) 모 시청의 시장이 시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일정을 살펴보니, 시의회가 소집된 일자가 공교롭게도 해당 시청에 대한 중앙의 감사일정과 겹쳤다. 이에 중앙의 감사를 회피하려고 시의회를 긴급 소집했다며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면, 이 기사는 진실한 보도일까?

* (4-3) 다포리(多捕里)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한 갑과 을의 선거전이 치열하다.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갑 후보의 진영에서 을 후보가 이전 어촌계장 재직 시절 어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정, 추석 명절 때마다 어촌계 이사, 감사 등에게 지급한 떡값이 도합 8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상세한 사건 내막을 제보 받은 기사는 '다포리 어촌계 보상금 운영 방만', '어촌계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수천만 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유용한 돈의 전체 금액은 맞지만 연도별 지급 액수가 사실과 달랐다. 이때 이 기사는 진실보도일까?

가. 문제의 제기

기사는 진실해야 하고, 이를 읽고 보는 독자들도 진실할 것으로 믿는다. 기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만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진실'이라 말하고 싶다. 진실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진실하지 않은 기사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제 아무리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논설위원이

나 기자라도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논설이나 해설 기사를 쓸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쯤에서 진실한 기사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이 뻔해 보이는 질문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문 지면이나 뉴스 화면에 사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진실인가?

나. 사례 검토

(1) 사례 4-1

위 사안을 살펴보면, 한 눈에 사건의 많은 부분이 보도 시에는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취재기자가 확인한 여러 사실 중에서 취재의도에 맞는 몇 가지 사실만이 기사화된 것이다. 이 보도로 입장이 곤란해진 B 정신병원으로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사에서 누락된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을 것이다.

- A를 병원 측에 인계한 것은 경찰이었다는 점
- 진료기록에 A의 이름을 엉터리로 기재한 것
- 역시 경찰 측의 잘못이 크다는 점
- (경찰이 작성한 행려병자 인계서에 A의 이름이 C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기사에서 누락함으로써 B 정신병원 측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한 해당 언론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릇 방송보도에 있어서는 취재된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방송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¹⁹⁾

취재의도에 맞는 기사 작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생략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례다. 이 사안의 특징은 생략은 있을지언정 허위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략을 넘어 허위사실이 기사에 개입되게 되면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2) 사례 4-2

이 사안에서 해당 기사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사실은 일단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시의회를 소집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일정이 중앙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감사일정과 겹쳤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진실했다. 그런데 시장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의회를 소집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 이 기사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방의회를 소집한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참이 아닌 거짓의 사실이 적시되었다. 그래도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실들은 진실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무방하지 않은가?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가 그저 부분의 오류, 지엽적인 오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기사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장의 시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고 적절한 평가 또한 내리지 못한 셈이다.

몇 가지 사실에 있어서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실해야 진실보도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진실이거나 단순한 외형적 진실이 아니라 그 동거나 사건 전체의 올바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어야

진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략이 아닌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 보도에 끼워져 있다면 진실보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사례 4-3

기사 내용 중 일부분에 있어서의 오류조차 경계해야 함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오류쯤은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판단내린 판결들이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는 없다.”²⁰⁾

아마도 기자의 눈에는 이 판시사항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 눈에 띄어 들어올 것이다.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시태도이기는 하나 이것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다.

사안에서 문제된 기사를 생각해보자.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풀어쓰지 못했지만, 해당 기사에는 총괄적인 사실(떡값으로 지급된 돈의 전체 금액, 대강의 지급처)과 세부적인 사실(연도별 액수와 돈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총괄적인 사실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실은 틀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누가 얼마를 떡값으로 받았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실이 바로 위 판결에 적시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점에 해당되어야만 언론사는 면책 받을

19) 부산지방법원 2006.2.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20)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

수 있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세부적인 사실은) 총괄사실의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각각 당시의 여론계 장인 ○○○과 총대인 ◇◇◇, □□□, △△△,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라거나, 총괄사실의 세부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총괄 사실을 다소 과장시킨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²¹⁾

전체적인 대강의 액수가 맞더라도 연도별 액수가 다르고, 특히 돈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이 받은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 정리

대부분의 세상일은 겉보기와는 달리 복잡하다.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하다. 그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지면 혹은 화면에 옮기는 것은 여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보도에서 생략과 취사선택을 위한 편집권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한 본질적인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이고, 나아가 기사에 오류가 개입되는 것이다. 아무리 편집권이 언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상당성과 언론보도

* (5-1) 유해식품사범 단속을 벌인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개의 번대기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언론사들은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종결되었다. 이 경우, 검찰(대한민국)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사는 오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가?

* (5-2) 아직 10대인 조모 양은 가출 후 한 남자를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중 조모 양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동거남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모 양의 아버지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고 혼인신고무효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기자는 조모 양의 아버지가 딸을 ‘강제로’ 집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문제는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조모 양의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조모 양이 집에 있었던 것이나 혼인무효신청을 내게 된 것 모두 그녀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 문제의 제기

상당성은 언론의 입장에서 오보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같다. 만일 상당성에 근거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상당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5-1

잘 알다시피 지난 98년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21)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3213 판결

포르말린이 나왔다고 보도된 업체들은 모두 도산했다. 언론보도의 과급력은 이처럼 막강하다. 아무리 건설한 기업체라 하더라도 보도 한 번 잘못 타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문제는 당시 보도들이 다 오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여러 언론사들은 마치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를 한 것처럼 앞 다투어 보도했지만, 후에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포르말린은 들어있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²²⁾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성분은 천연상태의 식재료에서도 얼마든지 검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조업체들이 인위적으로 넣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오보를 내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수사를 잘못된 국가(검찰)에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도에 앞서 좀 더 확인을 해보지 않은 언론사 역시 껴잡힐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피해자들은 국가와 더불어 관련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만 이겼을 뿐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졌다. 특히 '발암 통조림'을 운운했던 두 개 신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까지 다투어보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다시 말해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피해자의 생각일 뿐, 법원은 국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작성,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상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보도 자체에도 긴급과 신속을 요한다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지휘한 부장검사인 데다가 …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위 부장검사가 출입기자 전부를 불러 모아 놓고 …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 일문일답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압수한 통조림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 관련자들에 대한 보충취재를 통하여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분별하여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타 … 다수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관하여 일문일답 과정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의문을 해소하는 절차를 나름대로 거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는 취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²³⁾

지금까지 판례는 대체적으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나 국가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에 대해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공신력, 엄청난 인적·물적·법적 체계에서 나오는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일응 타당한 결론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경향이 언론의 국가기관 보도자료에의 의존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 다카츠키 타다나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언론의 취재방

22)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은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천연성분이고,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야 만들어지는 인공 합성물이다.

23) 대법원 2003.10.9. 선고 2003다24406 판결

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쓴 소리를 했다²⁴⁾는 것을 보면 필자의 의심이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다. “기자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당국자들이 찾아오고 배경설명을 빈번하게 해 줍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앓은 채로 기자가 당국자들을 불러내 설명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발표 자료가 기사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일부만 바꿔 그대로 자신의 기사로 하는 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기자의 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보도자료를 내는 측도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정책적인 면에서라도 이것은 점차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취재 관행을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보도의 여파로 오랜 시간 터를 닦은 기업체들이 순식간에 도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 앞에 단지 언론사들은 상당성을 근거로 결과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

(2) 사례 5-2

판례를 읽다보면, 문제된 기사 중 상당수가 사건 당사자 본인을 취재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였다. 솔직히 이것은 의외다. 물론, 그 주된 원인은 기자에게 있기 보다는 사건 당사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당사자 본인을 취재하고자 접촉했으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호소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쉽게 면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사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사는 불성실한 보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과정을 생략한 이 사건 보도의 상당성을 다음과 같이 부정했다.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 기자가 미성년자인 ○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²⁵⁾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 “(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 만연히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했다.²⁶⁾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는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최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초상권 관련 문제

* (6-1)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강풍까지 불어 체감

24) 다카츠키 타다나오(2007, 8월). 주한 특파원에게 듣는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0호, 서울, p. 92.

2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2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기온은 더 뚝 떨어졌다. 이런 계절이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의례히 보도되는 것이 날씨스케치다. 오늘 아침 평균기온이 몇 도라는 통계수치보다는 잔뜩 웅크린 행인들의 모습, 코트의 깃을 세우고 총총 걸음으로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서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어 즉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 여성의 사진 동의는 물론이고 촬영 후에도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그 여성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가?

* (6-2) 신입생 환영식에서 음주를 강권당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환영식의 폐단을 취재, 보도했다. 문제는 작가가 학생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환영식 장면을 취재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

* (6-3) 기사에 삽입할 사진이 급해 DB를 검색해보니 아주 괜찮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사진의 입수경위도 분명했다. 1년 전, 동료 기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찍은 사진이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당시 기사와도 관련 있는 내용이고 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했다.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일까?

가. 문제의 제기

내용이 아무리 좋고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킨 사진이라도 그 속엔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많은 사진들이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기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작년 가을,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에서 만난 한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기자의 주장 요지는 이랬다. “초상권 문제에 얽매이면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된다. 물론, 과거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진을 찍으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취재방식의 문제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6-1

초상권 침해로 조정이 신청된 사례 중에서 '길거리 사진'이 문제된 경우가 많다.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며 한 여대생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2006서울조정103), 벚꽃이 활짝 핀 여의도 윤중로를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문제된 사건(2006서울조정130), 무더운 여름날 음료수 컵을 들고 길을 걷는 젊은 여성 3인을 촬영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건(2006서울조정259) 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2007서울중재6)도 그 중에 하나다.²⁷⁾

27) 필자는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그곳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호주와 뉴질랜드 언론인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드니모닝헤럴드』 편집장인 Sam North와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한 위원은 거리나 공원은 Public place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무방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언론인들이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공통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입장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아마도 이런 유의 사진 촬영에 관해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별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촬영된 장면이 개인의 평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번거롭다거나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회피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촬영된 장면이 개인의 평판과는 무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초상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초상권은 명예와는 별개의 인격권이다. 다시 말해,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지 않아도 초상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다. 명예권과 초상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포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라고 할 이 상당하다."²⁸⁾

관결문의 실시 중에 핵심 구절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다. 초상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자기결정권이다. 내 얼굴이니까 그것에 대한 촬영 여부와 공포 여부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다. 따라서 내용에 상관없이 동의 없는 촬영 및 보도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다.

(2) 사례 6-2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동의만 있으면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일까?

이 사안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를 얻었으니 다 된 것일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촬영에 동의 내지는 협조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말에 속은 것일 뿐이다. 만일 본래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십중팔구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조차 동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 여흥장면 및 식사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 「공포의 통과외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 원고들의 ... 초상권을 침해하였다."²⁹⁾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무릇 속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각을 일으켜 표시한 의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후에 취소하여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는 구색만 갖추려고 급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언론에

28)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11.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29)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8.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대해 불신만 키울 뿐이다. 취재의도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동의 받는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3) 사례 6-3

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인데, 입시철만 되면 대입수험생이 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자신이 고3일 때 수능시험 성적표를 긴장된 표정으로 펼쳐보는 모습이 찍혀 보도된 이후로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면 자신의 사진이 신문지면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소 황당한 해프닝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다. 각 언론사마다 수십 년 전 자료까지 DB화하여 오래 전의 기사나 사진, 영상들까지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졌으니 말이다. 취재 및 보도의 효율성이 증진된 것은 좋은 일이나 초상권이라든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으니 무작정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DB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과거 한 번의 승낙이 오늘의 작업에까지 효력이 미칠지 여부는 그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의 동의할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한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7. 기타 문제점들

가. 탈북자 관련 보도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탈북하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지경에 빠졌다는 호소가 몇 번 있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다룬 철저한 익명보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익명보도의 문제보다도 탈북자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보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꼭 탈북자 관련 보도가 아니더라도 보도가 나간 후 관련자의 처벌이라든가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는 다른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탈북자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뻔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도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미성년자 관련 보도

TV 뉴스 시간이면 초·중학생들이 까불며 인터뷰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9.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하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해당 기자가 부모나 담임선생님, 학교 측의 동의를 얻었을까 하는 의심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얻지 않았을 것 같다.

이것은 미성년자들의 초상권 내지는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인격권에 관하여서는 설령 보도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의의 법적 성격이다. 인격권에 관한 동의의 법적 성격을 다수의 견해는 법률 행위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³¹⁾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유효할까?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당장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이것은 보도가 나간 후에도 마찬가지다. 취소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보도라면 언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취재에 관한 관행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취재에 앞서 일단, 학교 측에 취재의도를 정확히 설명한 다음 협조공문을 띄우고 학교에서 촬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절차를 갖추는 것이 당장은 번거롭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를 더욱 높이 쌓아가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Ⅲ. 나오며

1.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

판결이나 조정사건, 상담사건에는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이미 많은 경우 소송으로까지 번져 언론사들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져 왔거나 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취재관행과 보도관행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쇄신은 언제나 쉽지 않다. 부단한 자기반성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본다는 심정으로 분쟁에 뛰어들어 사건을 무마시키고 해결하는 데에 집중할 뿐, 분쟁이 종료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면 절망스럽다. 모든 분쟁이 항상 그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론보도 관련 조정이나 소송은 기존 관행에 대한 나름의 피드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새로운 취재 절차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다.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을 것인지 정립해나가야 한다.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확보된 언론사 내 DB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당사자의 명예나 초상권 등을 고려하여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세워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이 길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학자들의 연구물일 것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개별적인 사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도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1)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제39권 1호, 서울대학교, pp. 204-205.

2. 언론에 대한 부탁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기에 정국이 어수선했는데다 개인적으로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한 삼성의 비리 폭로로 인해서 더욱 어수선했음을 느낀다. 이럴 때 역시 믿고 의지할 것은 언론의 충실한 보도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보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삼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대선후보자들의 신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이 이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이 너무 미미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사소한 지적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고 했던가. 언론의 막중한 기능과 사명에 비추어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보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생길 수 있다는 노파심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론이 결국 추구해야 할 것과 각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언론의 막중

한 사명이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점점 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으로서의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조차 엄정히 다루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중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뉴질랜드헤럴드』의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신문사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서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가 거짓이 탄로 나는 바람에 해고되었다고 한다. 또, 그가 한 말 중에 'accuracy is very important'라는 짧은 문장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제도조차 없는 그곳에서 보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직접 항의를 하고, 많은 항의가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 법규나 제도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독자들의 불만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를 한참이나 앞서가고 있었다. 언론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고 막중할지라도 작은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초상권, 인격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세심한 우리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